
2024년도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Pool
제안요청서

2024. 3

KBIZ 중소기업중앙회

목 차

I. 위탁투자 개요

- 1. 개 요 ----- 1
- 2. 투자대상 ----- 1

II.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1. 목차 및 내용 ----- 4
- 2. 준수사항 ----- 5

III. 위탁투자 제안 안내

- 1. 선정절차 ----- 6
- 2. 제안자격 ----- 6
- 3. 선정일정 ----- 6
- 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7
- 5. 제안서 등의 평가 ----- 8

IV. 평가항목 및 배점 ----- 9

V. 붙임(각종서식) ----- 11

I. 위탁투자 개요

1. 개 요

- 목 적
 - 2024년 한국증시는 외국인 매수세 및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며 저평가 우량기업의 가치 재평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국내주식 위탁투자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를 모색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1년(자금집행은 시장상황 감안하여 집행)
 - 성과우수펀드는 연장 및 증액 추진
(성과부진 기관은 BM 평가 등 본회 방침에 따라 중도 회수 가능)
- 신규 위탁규모 : 국내주식 2,400억원 내외

2. 투자대상

- 위탁형태 : 국내 주식 및 주가지수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위탁 투자
- 투자유형 : 위탁운용사 Pool 사전 구축하여 적시 투자 가능한 여건 마련
 - 국내주식형은 ①액티브형 ②절대수익형 총 2개 유형 운용사 先 조기 선정, 시장 상황에 맞춘 後 자금 집행 추진
 - (액티브형) 업종·종목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을 바탕으로 코스피를 상회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유형(BM : KOSPI TR)
 - (절대수익형) 투자전략상 위험중립형 형태로 운용하며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BM : 연 8.7%) * 공모주, 룡숫전략 등
- 대상 위탁투자기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기관 (사모 펀드 설정가능 기관)

< 펀드 운용요건 >

- 모집방법 : 운용사별 AUM(운용자산) 기준 그룹 구분하여 접수
 - (A군) AUM 5,000억원 이상, (B군) AUM 5,000억원 미만
 - 운용사별 AUM(설정액) 5,000억원 기준('24년 2월말 금융투자협회 기준)으로 지원사를 분리하여 평가
 - (A군) 액티브형, (B군) 액티브형, 절대수익형 선정
 - * A군에 해당하는 운용사는 액티브형만 지원가능
 - ** 금융투자협회 회사별 설정규모(설정원본+계약금액, 투자지역 전체, 펀드종류 전체, 기금 전체)

- 제출대상펀드 : 전체 펀드 평가기간 동안 운용한 지원 유형별 펀드
 - 동일 회사에서 운용한 지원 유형별 제출대상펀드는 전체 제출
 - 펀드 평가기간 : 2022.3.1. ~ 2024.2.29(2년)
 - 각 펀드는 BM대비 초과 성과달성을 목표로 할 것

※ 참고사항

- ◇ 운용 주체의 지원 유형별 설정 잔고 및 운용 자산, 기간, 운용 수익률 등에 대하여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거래 기관에 한함(평가사: FnGuide)
- ◇ 개별 운용회사는 각 유형별로 동시 접수는 가능하나, 각 유형에 두 개 이상의 펀드로 중복지원 불가(현재 본회 국내 주식에 위탁운용을 기 실시중인 운용사는 지원 불가)
 - * 단, 기존 운용사도 현재 운용중인 유형의 다른 유형에는 지원 가능
- ◇ 사모펀드/일임계좌 자료제출은 수익자 동의서 증빙 후 자료제출 요망
- ◇ 개별 펀드에 대한 설정 및 환매 등의 시기 명시, 본회 투자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 발생 등 펀드 설정에 제약이 있거나 본회가 추구하는 위탁 유형 외 스팟형 펀드, 재간접 펀드는 지원 불가(사후 확인시 환매 조치)
- ◇ 펀드 평가기간 내 평균 설정액 (A군) 100억원, (B군) 30억원 이상인 펀드만 정량평가 대상으로 포함

○ 유형별 위탁규모 : 2,400억원 내외

- 운용사 선정 후 자금 위탁은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

구분		A군	B군	비고
운용사 규모		AUM 5천억 이상	AUM 5천억 미만	'24.2월말 금융투자협회 기준
유형	액티브	총 1,600억 내외 4개사(400억원 내외/개)	총 400억 내외 4개사(100억 내외/개)	
	절대수익	미선정	총 400억 내외 4개사(100억 내외/개)	
벤치마크		- 액티브 : KOSPI TR - 절대수익 : 8.7%(24년 국내주식 절대수익형 목표수익률)		
평가대상		- 재출 펀드 중 최근 2년(2022.3.1 ~ 2024.2.29)의 기간 동안 운용했으며, 2년 평균 설정액이 (A군) 100억원, (B군) 30억원 이상인 펀드		
세부전략		- 업종·종목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을 바탕으로 코스피를 상회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유형	- 위험중립 형태로 운용하며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 증시 상황 및 선정된 운용사의 기 운용중인 주식펀드 규모 감안하여 집행할 예정

※ 선정대상 평가 결과 금번 위탁유형 본회 여건 및 시장 상황에 적합한 운용기관이 없을 경우, 향후 주식 위탁 규모 조정
(지원하는 자산운용 회사의 수가 최소 선정(예정)사의 2배수 미만일 경우, 해당 유형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최종 선정사 수 축소 가능)

○ 투자기간 : 위탁일로부터 1년

- 성과우수펀드는 연장 및 증액 추진

(성과부진 기관은 BM 평가 등 본회 방침에 따라 중도 회수 가능)

○ 기타 사항

- 판매회사를 통하여 위탁 투자기관의 효율적 운용성과 관리 지속 모색

· 선정된 운용회사가 본 회와 합의한 총보수 이내에서 판매회사를 선택하여 운용·관리 예정

- 노란우산의 위탁 운용은 본회와 거래중인 사무관리 및 보관수탁, 성과평가 등 거래기관을 가능한 우선 고려하여 관리 예정

* 예시 : 운용보수(A), 판매(B), 신탁(C), 사무관리(D), 펀드평가(E)

→ 입찰가격 = A+B+C+D+E

II.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목차 및 내용

구분	내용
I. 제안업체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개요 : 회사명, 설립일자, 대표이사(취임일자 기재), 자본금, 임직원수 등 일반사항 및 연혁('23. 12월말 기준) · 소유구조 및 경영상황 요약('24. 2월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중대한 변화사항이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조치사항 등이 있으면 기재('24. 2월말 기준)
II. 위탁투자 수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이상) 공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위탁실적 · 본 유형 담당매니저 과거 운용 경력 및 성과 · 제안유형펀드 위탁실적, 운용수익률 및 BM(또는 목표·제시 수익률) 대비 성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유형 해당 유형별 '24. 2월말 기준 펀드 운용 수익률(최근 1년, 최근 2년, 설정이후 수익률은 필수 표기)
III.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 리서치,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 관련 전문인력 현황 · 최근 2년 운용, 리서치 인력 이직 현황 · 위탁투자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 조직도,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
IV. 위탁투자 수행 방법 및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철학 · 펀드 운용계획 및 운용전략 · 공제의 특성 및 업무에 대한 이해도(중소기업중앙회 포함) · 목표(또는 제시) 수익률·BM 수익률 추종을 위한 투자 대상·방법 등 투자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및 리스크 관리 제고 방안 등 · 포트폴리오 구성 등 운용 프로세스 정립 및 관리 방안, 컴플라이언스 절차 및 기준, 내부통제 시스템 등
V. 업무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투입계획 : 총괄 운용 책임자 및 담당자의 경력 및 주요 역할 · 기타 업무협조 및 지원 방안 등

※ 제안서 작성은 위의 사항을 따르되 제안사의 현황 및 제안 내용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추가가 가능함 (본 문서의 'IV. 평가항목 및 배점'에 명기된 내용 필수 포함)

2. 준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가능하다,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모두 계량화하여야 한다.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는 A4크기의 파워포인트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각 쪽에는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내용 중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별첨자료로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작성·제출된 모든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본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서는 제출기간 내에 시간을 엄수하여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우선협상 과정에서 운용사의 의사로 선정절차를 중도에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및 실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향후 2년간 진행되는 선정공고에 참여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Ⅲ. 위탁투자 제안 안내

1. 선정절차

-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및 정량평가 → 기술능력(정성) 평가 및 가격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및 위탁투자 개시
※ 추진절차상 필요시 위탁운용사 실사 가능
- 제안서 평가(정량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회사의 2배수 선정
- 평가방법 : 기술능력(정량·정성 평가) 및 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선정

2. 제안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기관(사모펀드 설립이 가능한 곳)

3. 선정일정

- 세부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위탁투자 공고	'24. 3.29	'24. 3.22~3.28 사전규격공개 예정
제안서 접수	~'24. 4.12	
제안서 평가	~'24. 4.30	정량평가로 프리젠테이션 평가대상 선정 (2배수 이내)
프리젠테이션 평가	'24. 5월중	기술능력(정성) 평가
선정 일자	'24. 5월중	선정 대상자 현장실사, 계약 협상 및 최종선정

* 정량평가 관련 일체 FnGuide(본회 성과평가 용역 수행기관) 위임

** 기간은 일정상 조정 가능

- 제안서 접수 : 2024. 4. 12(금) 15:00까지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총무회계실 대리 서영훈 (02-2124-3052)
- 제안 문의 : 금융투자실 과장 권준기 (02-2124-3326)
금융투자실 과장 손현희 (02-2124-3328)
금융투자실 부부장 박찬정 (02-2124-4046)

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 제안서(Page 30장 이내) 및 제안요약서 각 15부
- 제출 요구자료(Excel 파일 : 붙임 서식자료)
 - * 제안서, 제안요약서, 제출 요구자료는 E-mail(금융투자실 공용메일 : kbizfi@kbiz.or.kr 및 에프앤가이드 : 윤지민 대리(fnyjm@fnguide.com))로도 별도 제출, 파일명은 “국내 A군orB군, 00유형(00운용사)” 명시하여 제출
 - * 제안요약서는 프레젠테이션 평가에 사용
- 가격제안서 1부 : 회사명판 및 인감(사용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제출)
- 금융투자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접수시)
- 입찰보증금 납입확약서 1부(붙임 서식 참조)
- 기타 제안요청서 상 요구문서 각 1부
- 2023.12.31 기준 영업보고서 1부
- ** 서류 제출시 제출 봉투 겉면에 “국내 A군orB군, 00유형(00운용사)” 명시하여 제출

○ 유의사항(제안의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안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선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5. 제안서 등의 평가

- 위탁기관 선정은 제안서에 대한 정량평가를 통해, 정성평가 대상을 유형별 2배수 이내로 선정하고, 정성평가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에 대한 종합 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정성 평가) 95%, 가격평가 5%의 비중으로 함
- 기술능력 평가는 위탁운용 제안에 따른 제안 설명회에 관한 정성 평가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위원 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
- 기술능력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위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함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하여 프리젠테이션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소요 예정

IV.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정 한도
정량 평가	운용역량	·펀드 운용 성과 ·펀드 운용 규모 ·펀드 위험조정성과(액티브 : IR/ 절대수익 : 샤프비율)	60
	운용신뢰도	·최근 3년 금융감독기관 제재사항 ·운용조직 안정성(최근2년 이직률) ·운용인력 1인당 경력 ·리서치/위험관리 인력 수	30
	자본건전성	·최근 3년 자기자본비율 ·최근 3년 ROA	10
총 계			100

-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및 가격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정한도	
기술 능력 평가	정성 평가	경영 안정성	·최근 회사 경영상 중요한 변동 요인	5
		운용조직	·운용조직 안정성 ·운용조직(팀) 업무수행능력	10
		운용전문성	·운용철학 ·운용/리서치 조직 인력 및 역량	10
		운용전략	·펀드 운용계획 및 세부 운용전략	20
		운용관리	·포트폴리오 구성 등 운용프로세스 정립 및 포트폴리오 관리	10
		리스크관리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 체계 정립 ·펀드 수익률 하락 및 편입종목 하락시 대응 방안	15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 절차 및 기준의 적절성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5
		운용성과	·펀드매니저(팀)의 전문성 및 운용성과	20
가격평가	· 제안 보수율		5	
총 계			95	
총 계			100	

* 정성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처리

- ** 정성평가점수가 80.75점 이상인자만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있음
- ***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
- **** 정성평가 점수 또한 동일한 경우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운용전략, 운용성과 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입찰가격평가 : 5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 \right)$$

- * 평균가격 : 선정 공고 건별로 산정하며, 입찰된 해당 유형별 총보수 값의 평균
-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평균가격의 100분의 5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평균가격의 100분의 5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서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기관 성격 및 주요업무	
설 립 년 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서식 4]

동 의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p>상기 본 업체는 『2024년도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Pool』 입찰과 관련하여 귀 회 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 회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임을 동의 합니다.</p>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서식 5]

대표자용

보 안 각 서

하기 본인은 『2024년도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Pool』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체 및 계약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치(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업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보안각서

하기 본인은 『2024년도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Pool』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체 및 계약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치(형사
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참여자1	주소 :
	이름 : (인)
참여자2	주소 :
	이름 : (인)

* 작성대상 : 대리인, 계약이행 수행원 일체 (운용역, 리스크담당역 등)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서식 7]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 상대방이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방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서식 8]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 조건'으로 약정 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담당 임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2호)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서식 9]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성 명	입사일	비 고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직계가족 (관계 : * * * 의 * *)			

2.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청렴계약제 운영지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서식 10]

입찰보증금 납입확약서

입찰건명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

본인은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본
확약서를 제출하며, 입찰보증금을 귀 중앙회에 귀속해야할 사유(낙찰됐음에도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등)가 발생할 경우 위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귀
중앙회에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